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14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이영실, 이정인, 김혜련,  
김용연, 김동식, 오현정,  
봉양순, 서윤기, 이병도,  
김화숙 의원 (10명)

## 1. 제안 이유

-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 조사 결과 국민의 84.8%는 음주자로 인하여 공공장소의 안전에 위협, 66.7%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인한 폭력행사로 두려움을 경험하였다고 함.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상황으로 공공장소에서 주취자의 소란 및 폭력행위로 인해 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있음.
- 이에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폐해를 더욱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음주청정지역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차대 및 도시철도 역사를 추가로 규정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음주청정지역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 신설).
- 나. 음주청정지역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중 절대보호구역)을 추가(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 다. 음주청정지역에 사내버스 정류소·택시 승차대 및 도시철도 역사를 추가(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4.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차대 및 도시철도 역사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p> <p>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2.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p> <p>① ----- ----- ----- ----- ----- -----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u>어린이집</u>,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u>학교</u></p> <p>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u>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u></p> <p>4. <u>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차대 및 도시철도 역사</u></p> <p>5. (현행 제2호와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제1항에 제2호 내지 제4호를 신설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차대 및 도시철도역사 대상 안내판 설치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307,67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은 5년동안 307,670천원으로 연평균 61,534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추가지정 장소는 18,827개소이나, 설치하는 안내판의 수는 30,767개이며 시행 1차년도에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
- 이후에도 오염, 노후화 등으로 교체시기 도래시 추가비용 발생 가능

※ 개정조례안에 따른 안내판 설치대상 현황

(단위 : 개)

구분	어린이집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절대보호 구역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도시철도역사	계
개소수	5,737	2,228	1,721	2,228	6,254	331	328	18,827
안내판 수	5,737	4,456	3,442	8,912	6,254	331	1,635	30,767

- 어린이집,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승차대 각 1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도시철도역사는 출구(1,635개)별 각 1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각 2개 설치, 절대보호구역 각 4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의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개당 설치단가인 1만원을  
 준용하여 안내판 제작구매비용 산출(벽면 부착용, 포맥스재질)

○ 총 비용(합계) ≙ 307,670천원(연평균 61,534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음주청정지역 안내판 설치비용 (안 제4조 제1항 제2-4호)	307,670	-	-	-	-	307,670
	소계(b)	307,670	-	-	-	-	307,670
□총 비용(b-a)		307,670	-	-	-	-	307,670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